

대구예술대학교 사무직원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정 2008.03.13. 교무위원회)

(개정 2014.05.14. 법인이사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제1조(목적) 직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 41조에 의거하여 사무처 직원 및 우리 대학교에 재정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별표1>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① 일반직 및 기술직 (개정 2014.5.14.)

② 비정규직 직원

제3조(재정보증) ① 직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재정보증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은 우리 대학교를 피보험인으로, 해당 직원은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고 보험금액은 <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보험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 부담) 보증보험료는 해당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부담한다. 경리·회계, 용도·구매 직원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부담한다.

제5조(추가보전) ① 재직 중인 직원이 고의 또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재정 손실은 보증보험 가입액으로 총당하며 손실금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직원 본인이 추가로 보전하여야 한다.

② 추가보전 조치를 통고 받은 직원은 지체 없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08. 3. 13)

구 분	재정보증보험 가입액
경 리 · 회 계 업 무	일억원
용 도 · 구 매 업 무	오천만원
기타 직원	오백만원